

## 미얀마의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의 개요

정보신청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I. 서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대륙 사이에 있는 미얀마는 서쪽은 인도와 인도양,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태국, 라오스에 접하고 있는 반도국가이다. 미얀마는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아시아 식민지의 거점이 되었고,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며 국호를 버마 연방(Union of Burma)이라 하였다. 1989년 국호를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개칭하였고, 2010년 11월 미얀마 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다시 개칭하였다.<sup>1)</sup>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1962년 쿠데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등장했다. 이후 미얀마에서는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LD)이 압

승하였으나, 군사정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군부독재 체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얀마의 정치체제는 군사정권이 실권을 장악하고, 구체적으로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라는 과도기적 군사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합동연방의회에서 Pyithu Hluttaw(하원) 출신 부통령인 U Thein Sein 현 총리 겸 USDP 당수를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미얀마는 2006년 수도를 양곤(Yangon)에서 밀림지대인 편마나(Pyinmana)로 옮기고 이름을 네피도(Naypyidaw)로 바꿨다. 행정구역은 버마족이 거주하는 7개 구획(division, taing)과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7개 주(state, pyine)로 이루어져 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대외무역을 금지하였으나,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 1988년부터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 미얀마(Myanmar)는 미얀마어로 'strong' 또는 'fast'의 의미라고 한다.

여전히 규모가 큰 공장과 주요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영기업 대부분이 외화 부족에 따른 원료수입 곤란과 노후한 기계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현격히 낮은 상태에 있다. 현재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력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특히 해상 천연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개발 분야가 전통적인 농수산업, 임업 등과 함께 미얀마 전체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크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한-미얀마 경제협력관계는 개발과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한-ASEAN FTA 체결 이후 마련된 특혜적 경제관계는 미얀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 한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미얀마에 수출한 주요 수출품목이 사회간접시설 등과 관련된 철강재, 건설장비 등이라는 것은

앞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2)</sup> 아래에서는 미얀마에서 제정된 산업 및 경제개발 관련 규범들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엔지니어링 산업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규범의 내용들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 II. 미얀마의 주요 산업 관련법률

미얀마의 산업규범은 국내 정치상황과 함께 변화하였는데, 일부 규범의 내용은 미얀마의 중요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규제 의지를 보여 준다. 최근 미얀마의 주요산업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개발과 건설 및 자본투자 등에 관한 여러 규범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의 산업과 개발 등에 관련된 주요한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 Company Law(회사/기업 관련법)

Co-operative Society Law(조합법)  
Companies Act(회사법)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국영기업법)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사영기업법)  
Salt Enterprises Law(소금사업법)

### Investment and Development Law(투자 및 개발 관련법)

Special Economic Zone Law(경제특구법)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National Races Law(국경지대 개발 및 민족법)



2) 특히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이 해상가스광구를 개발하여 천연가스 플랫폼을 발주하였고, 2012년부터 천연가스를 상업생산할 예정이다.

**Transport and Maritime Law(운송 및 해상법)**

- Highways Law(고속도로법)
- Canal Act(운하법)
- Fishing Right of Foreign Fishing Vessels Law(외국선박의 조업권법)
- Aircraft Act(항공법)
- Marine Fisheries Law(해양어업법)
- Merchant Shipping Law Act(상선법)
- Traffic Law(교통법)

**Energy Law(에너지 관련법)**

- Atomic Energy Law(원자력에너지법)
- Electricity Law(전력법)

**Technology Law(기술 관련법)**

-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Law(과학과 기술 발전법)

**Mining Law(광업 관련법)**

- Mines Law(광산법)
- Pearl Law(진주채굴법)

**Environmental Law(환경법)**

- Animal Health and Development Law(동물안전 및 개발법)
- Forest Law(산림법)
- Freshwater Fisheries Law(담수어업법)
- Protection of Wild Life, Wild Plants and Conservation of Natural Areas Law(야생동물, 식물보호와 자연지역보호법)
- Tourism Law(관광법)

**Labor Law(노동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근로안전보건법)

미얀마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사 및 기업 관련 규범을 살펴보아야 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형태의 독자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미얀마의 국내기업과 합작을 하는 형식 등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에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얀마의 투자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한다.

미얀마에 대한 자금투자는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Special Economic Zone Law(경제특구법)와 같은 특별한 법규를 통해서 대상과 지역, 산업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금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미얀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Salt Enterprises Law(소금사업법)와 같은 특별한 입법을 통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다. Mines Law(광산법)와 광업 관련 규범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고용 및 노동법 분야에서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근로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운송 및 해상법 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엔지니어링 산업이 건설과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각종 건설 및 운송 관련 규범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얀마는 메콩강 유역국가로서 동남아시아 해안을 타고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운송과 관련된 건설과 개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륙운송에 관하여는 고속도로 건설 등에 관한 Highways Law(고속도로법), 기타 Traffic Law(교통법) 등이 있으며, Canal Act(운하법)도 내륙운송에 관련이 있다. 해상 및 항공운송에 관하여는 Merchant Shipping Law Act(상선법)와 Aircraft Act(항공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어업과 관련하여, Marine Fisheries Law(해양어업법)와 Fishing Right of Foreign Fishing Vessels Law(외국선박의 조업권법) 등이 있다.

미얀마는 건설과 개발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들도 마련하였다. 개발과 자연보호에 직접 관련된 법률인 Animal Health and Development Law(동물안전 및 개발법), Forest Law(산림법), Protection of Wild Life, Wild Plants and Conservation of Natural Areas Law(야생동물, 식물보호와 자연지역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경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National Races Law(국경지대 개발 및 민족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관련 사항을 명시한 Tourism Law(관광법)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Ⅲ. 미얀마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2011년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미얀마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는 외국투자자본유입을 위한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미얀마 투자기업은 31개국의 430여 개 기업으로, 대부분 엔지니어링 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원전과 가스 등 천연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외국인투자법 발효 이후 2010년 10월까지 약 3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개발 및 개발진행 예정인 경제특구지역은 24개 지역으로 대부분이 규모가 큰 건설 및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구 기업들은 미얀마 GDP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얀마 자체 생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미얀마 경제특구법은 아래와 같이 1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투자특권, 토지이용, 금융, 보험 및 신청조건과 절차 등이다. 투자자가 가지는 혜택과 특권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은 10여 년에 이르는 법인세 면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건설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특구지역 내 토지임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제1장 명칭 및 정의
제2장 목적
제3장 경제특구
제4장 미얀마 경제특구와 관련된 중앙조직, 중앙사무조직 및 관리위원회 구성, 기능 및 의무
제5장 투자자의 특권
제6장 개발사업시행자와 투자자의 특별 의무
제7장 토지 이용
제8장 은행, 재정 관리 및 보험 사업
제9장 관세청에 의한 상품의 관리 및 검사
제10장 검역 검사 및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제11장 노동 관련 사항
제12장 기타

미얀마 경제특구법은 제1장(제1-2조), 제2장(제3조), 제3장(제4-8조)에서 각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 법의 목적,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8조는 경제특구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분야는, 첨단기술산업, 국가경제발전 증진 사업, 무역 및 서비스 증진 사업, 인프라 구축 증진 사업, 고용 창출 사업,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한 내국민 투자 사업, 자연 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그리고 기타 중앙조직이 규정하는 사업이다. 제4장(제9-14조)은 이러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기관의 설치와 그 책임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제15-25조, 투자자의 특권)과 제6장(제26-34조, 개발사업시행자와 투자자의 특별 의무)은 미얀마 경제특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일정한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특권은 주로 소득세 등의 면제에 있다. 즉 이 법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최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에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 이익에서 소득세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금면제와 감면기간이 지난 후라도 수출제품의 총 생산 가치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50%, 중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60%, 소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70%를 초과하면 다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제특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상업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구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혜택도 있다. 제7장(제35-37조)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에 따라서 30년 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30년 사용 후 다시 30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15년

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중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0년의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면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시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소규모 투자기업은 30년 사용 후 5년간 2회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를 최대 75년까지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제8장(제38-40조)은 경제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은행, 재정 관리 및 보험 사업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다. 외화로 운영되는 사업은 국내외 어떤 은행과도 해외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외화로 영수 및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 자국의 화폐로 경제특구 내에서 또는 해외로 환전하거나 송금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외국 보험회사 및 합작보험회사는 대리점 사무실 및 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장(제41-46조)은 경제특구와 관련된 미얀마 관세청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경제특구법은 제10장(제47조, 검역 검사 및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제11장(제48-51조, 노동 관련 사항), 제12장(제52-59조, 기타 규정)을 두었다. 이 법에 따라서 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얀마 정부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미얀마 경제특구법은 1988년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 이후 23년 만에 새롭게 발표된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로서, 외국인 자본유치 및 국가 수출의 진흥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미얀마 투자에 따른 권리와 의무

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범이다.

## IV. 미얀마 고속도로법(Highway Law)

미얀마의 운송체계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미얀마 정부는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 고속도로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러한 미얀마 정부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전체 6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얀마 건설부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부가 이러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범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고속도로가 운송과 관련된 공적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이 법은 미얀마 국가 전체의 운송과 개발, 건설 등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1장 명칭과 정의
제2장 목적
제3장 건설부의 의무와 권한
제4장 공적 시설과 관련된 업무부서(Public Works)의 의무와 권한
제5장 위반과 벌칙
제6장 기타

미얀마 고속도로법 제1장(제1-2조, 명칭과 정의)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와 이 법의 명칭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라 함은 미얀마 건설부가 공시를 통하여 명명한 것을 말하는데, 도로와 연결된 교량과 인접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장 제3조에 따른 이 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주(states)와 구획(divisions) 사이의 통신과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단결과 우호를 증진하며,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모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도로와 통신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물품의 신속한 운송을 돕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가 내부적으로 또는 국외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의 현대화와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넷째, 고속도로의 유지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의 체계를 감독하고자 함이다.

전체 12개항으로 구성된 제3장 제4조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활용, 유지와 관련하여 미얀마 건설부가 가지는 권한을 매우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도로와 통신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승인 아래 정책을 수립하는 것
2.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되는 단기, 장기 및 특별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확정받는 것
3. 정부의 승인에 따라 인접국가들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4. 일정한 시기 내에 계획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것
5. 고속도로로 공시 및 지정하는 것
6. 고속도로의 경계를 공시 및 지정하는 것
7. 고속도로의 건설과 확장을 위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다른 부서 및 기관들과 협조하는 것
8. 고속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지도 및 감독하는 것
9. 고속도로의 건설, 확장,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개별기업 또는 경제기구와 직접 합작투자사업을 실시하거나, 법규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조건과 기한을 제시하여 이를 허가하는 것
10. 고속도로의 건설과 확장에 관련하여, 법규에 합치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것
11.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를 임차하거나 수입하는 것
12. 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는 것
13.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

미얀마 건설부의 기능은 크게 공적시설과 관련된 업무부서(Public Works)와 주택의 건설과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건설분야(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로 나누어진다.<sup>3)</sup> 제4장(제5-6조)은 공적시설과 관

련된 업무부서(Public Works)의 의무와 권한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건설부의 역할 중에서 고속도로 건설과 보수 및 유지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권한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각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http://www.construction.gov.mm/Index.htm>.

1. 국가의 운송과 통신의 현대화 및 발전을 위해 건설부가 수립한 정책에 합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2. 고속도로의 건설과 확장에 관하여 건설부에 단기, 장기 및 특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3. 예정된 기간 내에 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4. 고속도로의 유지 및 보수행위
5. 고속도로 구역에 나무를 심거나 제거하는 것
6. 고속도로 길가의 너비를 확정하는 것
7. 고속도로의 보수와 확장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
8. 고속도로에 출입이 허용되지 못하는 차량, 바퀴, 중량 등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
9. 고속도로에서 우마차와 동물의 교통에 관하여 조건과 제한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
10. 고속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
11.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는 행위 및 광고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

고속도로법은 제5장(제7-9조)에서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와 보수 등에 위협이 될 만한 사항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형사법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제6장(제10-14조)에서는 이 법과 관련되는 기타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제10조는 고속도로 아래로 가로지르는 각종 파이프라인과 전선, 케이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관은 모두 건설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실제 공사과정에서도 건설부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1조는 고속도로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건설부가 '도로와 교량의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V. 미얀마 국경지대 및 민족법(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National Races Law)

미얀마는 오랫동안 메콩강 유역의 이웃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국경지역의 국민과 문화의 통일성 및 독창성의 보호가 중앙정부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미얀마가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국경지역에 관한 고려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미얀마의 국경지역은 민족간 차이가 심하고 정보의 수집과 공유가 어려우며, 마약 등의 원료재배에 이용되는 등의 사회/국가적 문제도 낳았다. 따



라서 미얀마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건전성 보장 및 교육을 통해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미얀마 국경지대 및 민족법(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National Races Law)은 1993년 제정되어 이러한 미얀마의 정책을 반영하였다. 이 법은 전체 6장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명칭과 정의

제2장 목적

제3장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무 및 권한

제4장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무 및 권한

제5장 국경지대 및 지역민족부의 의무와 권한

제6장 기타

제1장(제1-2조)은 이 법의 명칭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2장(제3조)은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경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사업을 발전시키고 국경지역 국민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가의 영속성과 단결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아래, 국민의 문화와 언어 및 관습 등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국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3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식물의 상업적 재배를 근절하고 국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 국경지역이 마약원료의 재배와 공급에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제4-5조)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무 및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중앙위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실무위원회를 지휘한다. 제4장(제6-7조)은 중앙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및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허가과 감독을 통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시 하부조직으로 각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실무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러한 실무위원회, 하부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제5장(제8-9조)은 정부 내에 국경지대 및 지역민족부를 설치하고 그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정부는 각 위원회와의 협력 속에서 국경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9조는 정부가 이러한 개발사업과 업무를 위해서 UN 및 각종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제8조에서 규정된 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지역에 관한 결정의 권고
2. 하부위원회와 지역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단기 및 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3. 장단기 실천계획의 실행의 감독 및 협력
4. 즉각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지역의 개발에 관한 실행, 감독 및 협력
5. 중앙위원회의 감독에 따른 각종 자금과 지원의 분배 및 집행
6. 자문에 관한 규정과 절차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와 감독
7. 개발지역의 민족간 문화적 교류와 정보의 전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8. 개발지역 주민의 미래를 위한 청년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의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
9. 개발지역에서 종교적 전파와 교육을 위한 관련 사항
10. 양귀비 재배를 대신하는 경작과 목축 및 기타 가내산업을 위한 관련 사항
11. 양귀비 재배 및 아편가공과 거래를 막는 기술의 보급
12. 개발지역에서 마약중독자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 사업의 계획과 수행
13. 국경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의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14. 개발지역에서 경계를 나타내는 구조물 및 표시물 등에 대한 보존
15. 개발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용자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실무위원회에 대한 권고
16. 실무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

이 밖에 제6장(제10-12조)은 기존의 관련 국가 기구들과의 관계, 관련 정부 공무원의 임무, 예 산 및 하위규범 제정권 등에 관한 기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미얀마의 국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취약성과 개발의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의 목적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얀마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경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규의 취지와 내용도 살펴보고 사업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 VI. 결어

한-미얀마 경제협력관계는 향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한-ASEAN FTA 체결 이후 변화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관계와 미얀마 정부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 및 민주화 현상은 미얀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분야에 있어서 진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산업규범은 국내 정치상황과 함께 변화하였는데, 최근 들어 투자 관련 규범과 특정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경제개발의지를 담은 규범들의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의 주요산업의 구조가 변화

하면서, 개발과 건설 및 자본투자 등에 관한 여러 규범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얀마의 산업 관련 규범들의 대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미얀마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과 외국자본의 유치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반면에 여전히 미얀마에는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국내에서는 성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이 OECD의 DAC에 가입한 이후 개발도상국

에 대한 원조공여국이 되면서, 해외원조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업수주의 직간접적 연관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해외원조와 기술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는 미얀마의 국내 관련 규범에 대한 연구, BOT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한국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김 봉 철**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